

난방전기화 사업 대상제품 선정 평가 기준

1 난방전기화 사업 대상제품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성능기준*	난방성능 기준 충족	5	정량평가 (70)
	친환경 냉매 사용 여부	5	
	소음기준 달성	5	
	최고 출수온도 성능	5	
제조능력	자사 공장 생산 여부	10	
	국내 생산 시점	10	
사후관리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 여부	5	
	고장 접수 후 현장확인 소요기간	10	
	주요부품 A/S 평균 재고보유 기간	10	
안전기준	관련 안전기준 취득여부	5	
가격 적정성	가격산정 근거의 타당성	5	정성평가 (30)
	신청가격의 적정성	5	
산업기여도	주요부품 국내 조달	5	
	주요부품 자체기술 보유	5	
	국내 일자리 창출	5	
보급역량	보급사업 수행 경험 및 이행역량	5	
합계		100	

* 성능기준 20점 미획득 시 타 평가항목 0점 처리

2 정량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성능기준

1) 난방성능(5점)

구분	배점	
	5	0
난방성능	SCOP 3.3 이상(출수온도 55°C), 4.5 이상(출수온도 35°C)	SCOP 3.3 미만(출수온도 55°C) 또는 4.5 미만(출수온도 35°C)

※ 사업신청자는 공인 등록된 시험인증기관에서 EN14825(기후조건: AVERAGE) 시험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냉매 환경성(5점)

구분	배점	
	5	0
냉매	오존파괴지수(ODP) 0,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하	오존파괴지수(ODP)가 0 초과 또는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상

※ 프로판(R290) 냉매 사용제품은 ODP·GWP 기준 충족여부와 별개로 주거시설 보급사업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상 고려 필요성이 있어 제품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신청자는 히트펌프에 사용된 냉매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냉매명이 기재된 제품 규격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격 최대 소음(5점)

구분	배점	
	5	0
정격 최대소음	65dB 이하	65dB 초과

※ 사업신청자는 공인 등록된 시험인증기관에서 EN12102-1 시험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최고 출수 온도(5점)

구분	배점	
	5	0
최고 출수온도	65°C 이상	65°C 미만

※ 사업신청자는 공인 등록된 시험인증기관에서 EN14825(기후조건: AVERAGE) 시험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능력

1) 자체 생산 여부(10점)

구분	배점	
	10	0
자체 생산 여부	제조사가 자체 생산하는 경우	OEM, ODM 등 제조사가 자체 생산하지 않는 경우

- ※ ① 제조사가 해당 히트펌프 완제품의 설계도서를 보유하고 생산공정 관리·품질검사 수행·출하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생산으로 인정한다
- ② 사업 신청자는 자체 생산을 증빙하기 위해 공장등록증, 현장사진, 자체 생산 확인서, 생산 이력 관리자료, 생산설비 현황 및 외주계약 현황서 등 자체 생산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 생산 시점(10점)

구분	배점			
	10	8	6	0
국내 생산시점	공고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제조공장에서 최종 조립공정을 수행한 경우	'26.12.31일까지 국내 소재 제조공장 에서 최종 조립공정 수행이 가능한 경우	'27.12.31일까지 국내 소재 제조공장 에서 최종 조립공정 수행이 가능한 경우	국내 소재 제조공장 운영 계획이 없거나, '28.1.1일 이후인 경우

- ※ ① 사업 신청자는 최종 생산을 완료하는 공장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 등),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국내 소재 제조 공장이 없는 경우 국내 공장 이전 계획이 담긴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필요시 생산 공장에 대해 현장 실사 예정

3. 사후관리

1)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 여부(5점)

구분	배점	
	5	0
고장·장애 관련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여부	충족	미충족

- ※ 상시 대응시스템 구축은 연중무휴 대응 관리체계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신청자는 상시 대응시스템 구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4시간 대응 시스템 운영현황서, 당직 운영 체계 문서, 장애·고장 대응 매뉴얼, 콜센터·온라인 등 접수채널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장 접수 후 현장확인 소요기간(10점)

구분	배점		
	10	6	0
고장 접수 후 현장확인 소요기간	2일 이내	4일 이내	그 외

- ※ 사업 신청자는 고장 접수 시점부터 사후관리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 확인까지의 소요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 내부규정, 표준업무절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요부품(열교환기·압축기·응축기·사방변) A/S 평균 재고보유 기간(10점)

구분	배점	
	10	0
주요부품 평균 재고 보유기간	8년 이상	8년 미만

※ 주요부품 평균 재고 보유기간은 주요 부품의 A/S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고 보유 또는 조달 체계를 갖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주요 부품 A/S 지원 계획서, 주요 부품 공급 확인서, 재고현황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기준

1) 안전인증 취득 여부(5점)

구분	배점	
	5	0
안전인증 보유 여부	충족	미충족

※ ① 제조사는 CB인증서(IEC 60335-2-40) 등의 안전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미보유 제품에 한해 국제 공인시험 인증기관이나 KOLAS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관련 KC 안전기준(60335-1, 60335-2-40) 등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 제출과 CB 인증 접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보유 제품이 대상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CB 인증서를 제출한 이후 보급·설치가 가능함

③ 정성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가격 적정성

1) 가격산정 근거의 타당성(5점)

구분	배점		
	5	3	1
가격산정 근거의 타당성	신청가격의 산정근거와 산출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가격 형성과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	신청가격의 주요 구성항목과 산정 근거는 제시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의 산출 기준 또는 단가 적용근거가 다소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가격의 구성 항목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주요 비용의 산정 근거가 부족하여 가격 형성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가격산정 근거의 타당성은 신청 가격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비, 설치비, 운송비, 유지관리 관련 비용 등 가격 구성요소의 명확성과 각 항목 산정 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사업 신청자는 가격 산출 근거서, 주요 부품 명세서, 부대비용 세부 산출내역 등 가격 형성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가격의 적정성(5점)

구분	배점		
	5	3	1
신청 가격의 적정성	가격 산정 근거가 명확하고 제품 성능 및 사양에 비추어 신청 가격이 합리적인 경우	가격 산정근거와 신청가격 수준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가격 산정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제품 성능 및 사양에 비해 신청가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가격의 적정성은 신청가격이 제품의 성능, 용량, 효율 및 주요 사양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지원사업 참여를 이유로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사업 신청자는 신청가격 내역서, 제품 카탈로그, 필요시 가격 변동 사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기여도

1) 주요부품 국내 조달 비중(5점)

구분	배점		
	5	3	1
주요부품 국내 조달 수준	주요 부품의 상당부분을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조달하며, 핵심부품에 대해서도 국내 조달체계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요 부품 중 일부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에 대해 해외 조달 의존도가 있는 경우	주요 부품의 국내 조달 계획이 제한적이며 전반적으로 해외 조달 의존도가 높은 경우

※ ① 국내 조달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주요 부품의 국내 조달 수준은 주요 부품의 국내 공급망 확보 정도,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사업신청자는 주요부품의 국내 조달 비중 및 공급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부품 관련 자체기술 보유(5점)

구분	배점		
	5	3	1
주요부품 관련 자체기술 보유	주요부품에 대한 자체 설계·성능 개선·제어기술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요 부품과 관련한 일부 자체 기술 또는 기술 개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의 상당 부분을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	주요 부품과 관련한 자체 기술 보유 수준이 제한적이며 설계·개발·제어 기술 전반을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

※ 주요 부품 관련 자체 기술 보유 수준은 주요 부품의 자체 설계 여부, 성능 개선 및 제어기술 보유 여부,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문서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주요 부품 기술보유 현황서, 기술설명서, 특허·실용 신안·프로그램 저작권, 연구개발 실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여 (5점)

구분	배점		
	5	3	1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여	국내 히트펌프 제조 관련 사업 전반에서 신규 고용 또는 고용 유지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국내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적용 분야나 규모가 제한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고 관련 계획 및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국내 생산·조립·유지보수·연구개발 등과 연계된 고용 창출 또는 고용 유지 가능성, 관련 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고용기여 설명서, 조직도, 인력 운영 현황, 인력 확충 계획, 국내 서비스망 운영현황 자료, 교육훈련 계획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급 역량

1) 보급사업 수행 경험 및 이행역량(5점)

구분	배점		
	5	3	1
보급사업 수행경험 및 이행 역량	히트펌프 또는 유사설비 보급·납품·설치·사후관리 사업수행 경험이 있고 사업 이행역량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	보급 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부족하나, 사업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경우	보급 사업 또는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보급사업 수행경험 및 이행역량은 유사 사업 수행실적, 사업관리 조직 및 인력 보유, 납품·설치·일정관리 체계 및 민원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신청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선정 기준: 정량·정성 평가 점수 합산 80점 이상

[붙임 1]

국내 생산시점에 관한 약속서

주식회사 0000 社는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의 대상 히트펌프 제품 생산 공장을 0000년 00월 까지 국내로 이전하여 생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전 위치: 0000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허위 제출시 사업 참여제한 동의서

주식회사 0000 社는 「2026년 난방 전기화 사업」의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자社의 제품 목록 제출과 관련하여 작성내용과 제반 제출 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이번 사업을 포함한 기후부의 ‘히트펌프 보급’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에 어떠한 이견도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